

## 우리는 교도소에 가야만 하나 Going to the Penitentiary, Is it an Obligation?

장양순 / 동명건축사사무소, 본지 편찬위원장  
by Chang Yang-Soon

그동안 올림픽 메달따는 소식에 그나마 가까이 했던 텔레비전과 신문을 요즈음은 주마간산 격으로 지나칠 뿐이다. 부실기업의 해외매각 실패, 연속되는 주가의 하락 그리고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 등 모든 경제상태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건축계는 IMF이후 소생의 기미도 없는데 우리 나라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6건설의 부도설, 2차 구조 조정 대상 기업 중 퇴출 대상 기업의 절반이 건설업체라는 보도 그리고 1만개 이상의 건설업체가 연말까지 부도가 나리라는 소문 등 타 업계에 비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건축사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의 허가건수를 보면 96년도에 6천명의 회원이 7만9천여건으로 1인당 13건을 수주한데 반하여 작년보다 훨씬 나이진 금년의 경우 7천7백여회원이 3만1천여건으로 1인당 겨우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설계비의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없어진데다가 수주량 감소를 기화로 질을 따지지 않는 건축주들의 횡포 그리고 노는 것보다는 적자가 덜하리라는 건축사들의 생존본능이 겹쳐 설계비는 한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건설성이, 미국은 건축사협회에서 설계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꼼짝 못하게 묶여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주 총액은 4년 전의 30%라는 수주건수와 관계 없이 형편없이 줄어든 실정이다.

지금 대다수 건축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처럼 로우 스쿨을 연기시킬 힘도 없고, 의사들처럼 국민을 볼모로 권리를 쟁취할 수도 없기에 전문직업인으로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요즈음 우리에게는 설상가상으로 교도소행을 예행 연습해야하는 사태가 예고되어 있다.

건교부는 건축법 77조 벌칙적용을 개정하여 공무원 의제에서 법제 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을 132조 및 227조를 적용한다고 입법 예고 하였다. 쉽게 말해 현장조사 검사 업무 및 확인 업무에서 이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공무원에 준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입법의 취지는, 이렇게 중형(重刑)을 적용함으로써 씨랜드 화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씨랜드 사고는 총체적으로 썩어 빠진 이 사회가 만든 사고이다. 그렇다고 설계나 감리 그리고 조사업무를 책임진 건축사가 이유야 어떻든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전문인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이런 사고의 방지를 위해 벌칙만을 강화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첫째 현실성이 결여된 수수료의 문제이다. 법령은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대행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규칙 제 10조 관련 건축허가 수수료를 보면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의 경우 2천 원부터 1천 제곱미터 미만이 1만 5천원 이하이다. 물론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허가건수 대부분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보면 거의 모든 건축물의 검사업무가 천여원 또는 1만원 이하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필자는 지방에 소재한 설계를 하면서 1200원인가 하는 금액을 인장 지참하고 조사검사 업무비로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고 고소를 금치 못한 적이 있다. 금액도 금액이려니와 주려면 온라인 송금이라도 할 일이지, 그곳까지 가려면 인건비는 고사하고 여비만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을 포기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또한 최근 같이 있는 건축사 한 분이 부산 소재 건축 설계를 수주한 바 허가서류의 현장조사서는 본인 이외의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비행기로 동행하여 조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넓은 공장 부지를 눈 하나로 완벽하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겠나?

부동산 중개사의 경우 무책임한 부동산 중개를 막기 위해 부동산의 등기 권리관계부터 구조, 전기, 수도 등 건물 유지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부동산 수수료를 그에 걸맞게 인상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또 다시 50% 인가 상향 조정하였다고 들었다. 조정전으로만 계산하여도 시가 1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매매 수수료는 3백만원에서 1천8 백만원이 되는데, 대지가를 무시해도 이 정도면 1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건축물의 현장 조사 검사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수수료는 최대 7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건축사가 조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씨랜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려면 대지의 경우 고저측량과 매설물 탐지도 해야하고, 사용검사의 경우 각종 장비가 건축물에 따라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외주비나 장비사용료는 물론 여비 교통비 및 건축사와 보조원의 인건비도 계산이 안된 비용을 지금 하며 책임을 지라 한다면, 이는 감옥에 가기 싫으면 네돈 내서 조사업무를 착실히 행하라는 공갈 협박과 다름이 없다.

둘째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가 있는 법령을 보면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법에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전기사업법 및 동 공사업법, 도사가스 공사업법, 산업 표준화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만 이들이 들어 있다. 즉 건축사와 유사한 전문 자격사들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은 공무원 의제에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수십조의 국민혈세를 부어 넣고도 회생도 매각도 안되는 대우그룹의 회계 감사를 맡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회계법인도 잘해야 회사의 인가 취소 외에 공인회계사가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또한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귀중한 차량을 뜯쓰게 만드는 이들은 잡아 놓고도 처벌 규정이 없어 내보낸다는 뉴스도 접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특별검사원제를 도입한 후 위법건축물이 감소했다는 낭보가 있다. 우리 건축사들은 불법 위법 건축물은 물론 씨랜드와 같은 사고의 재연을 원치 않는다. 또한 부당한 자기 회생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책임에 응분한 수수료의 지급을 원할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77조의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 건축법 80조 2호에 의한 벌칙적용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 2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당해 건축사를 행정처분하고, 조사 검사 업무의 대행자에게 인건비 및 여비 그리고 조사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료와 기타 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 제23조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 법이 강화될수록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인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뒷받침이 없는 법의 강화는 범죄자 양산과 국가와 국민, 사회의 계층간에 원망과 불신만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건교부가 국민과 건축사들의 중간에서 서로가 이익이 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國